



VI

공동주택 경비·청소원 예외 인정 기준



공동주택 경비·청소원 지원 기준

공동주택 경비·청소원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

* 공동주택 :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(아파트·연립주택·다세대주택)

지원 대상

-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은 관리하는 공동주택 각 사업장별로, 그 외의 사업은 해당 사업별로 전체 근로자수가
 - 30인 미만 ⇒ 소속 근로자 전부 지원
 - 30인 이상 ⇒ 경비·청소원에 대해서만 지원

지원금 수령

- 최저임금 인상분의 실질적 부담 주체인 입주자(시설주) 등에 지원금 지급
⇒ 용역업체가 “지원금 + 최저임금 인상분 시설주에 재청구”하는 부정수급 방지
⇒ 실제 부담자인 시설주에 지원금 직접 지급하여 경비·청소원 등의 고용불안 해소
 - * 공동주택별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유무, 관리비 관리 주체 등이 상이하여 유형별로 구분 지원
-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직접 경비·청소원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

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

제출서류

- ☑ 입주자대표회의(또는 자치기구)와 위탁업체간 지원금 신청 및 수령에 관한 “표준협약서”
 - 표준협약서에 지원금 신청내역 기재,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확인
 -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·청소원 등을 직접 고용한 경우는 협약서 불필요

신청방법

- ☑ [온라인] 4대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홈페이지,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
[오프라인] 근로복지공단으로만 가능
 - ① 고용보험 취득신고나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②체크리스트 작성
 - ③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내역(공동주택용) 서식 작성·제출

신청시
유의사항

- ☑ ‘일자리안정자금 신청내역’에 공동주택별로 구분 기재
 - * 용역업체가 2개 이상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
공동주택별로 지원대상 근로자 및 지급대상 입주자대표회의 계좌 구분 기재
- ☑ ‘경비·청소원’ 여부를 신청서식에 체크
- ☑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(K-apt시스템) 필수등록대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등록
 - * 미등록 확인 시 해당 월부터 지급보류 → 등록 이후 소급 지급) ⇒ 모니터링 실시
 - * 필수등록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지도·점검 등을 통해 지원금 차감 내역 등 확인